

제4장. 예산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

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,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25 회계연도

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한 것은

1. 예산이용(0 건) 0 원
- (1) 일반회계는(0 건) 0 원
- 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
총괄은(0 건) 0 원
2. 예산전용(22 건) 3,029,566,000 원
- (1) 일반회계는(22 건) 3,029,566,000 원
- 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
총괄은(0 건) 0 원
3. 예산이체(7 건) 1,425,212,090 원
- (1) 일반회계는(7 건) 1,425,212,090 원
- 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
총괄은(0 건) 0 원 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